

제 1916호  
2010. 7. 21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
편집인: 관 광 공 보 과 장 정 진 태  
전화: 3396-4963  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 의 장
람	

# 구 보

- 고 시
  - 제2010-53호 : 을지로2가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 ..... 2
  - 제2010-56호 : 동대문중부상권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..... 5
- 공 고
  - 제2010-493호 : 무연고 변사자(행려사망자) 공고 ..... 7
  - 제2010-500호 :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..... 8
  - 제2010-504호 :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계획)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..... 9
  - 제2010-512호 : 쌍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..... 13
  - 제2010-516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6
  - 제2010-517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17
- 인사발령
  - 5급 일반직공무원 공로연수(2010년7월20일자) ..... 26
  - 일반직공무원 복직, 전보 및 휴직(2010년7월20일자) ..... 26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  
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● 구보게재 의뢰 TEL.(02)3396-4963 / FAX.(02)3396-4322  
 ●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 - 53호

을지로2가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

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8-22호(2008.04.04)로 사업시행인가 되고, 같은 고시 제2010-50호 (2010.06.30)로 공사완료 고시된 을지로2가구역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우리 구에 이전고시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0년 7월 21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을지로2가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. 정비사업의 위 치 : 서울시 중구 수하동 50번지 일대  
(확정지번 : 중구 수하동 66번지 외 5필지)

다. 정비사업의 시행면적 : 5,085.40㎡(종전 5,101.90㎡)

시행면적	대지면적 (㎡)	정비기반시설 면적(㎡)			비고
		소계	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(㎡)	계획부지내 기존공공용지(㎡)	
5,085.40 (종전:5,101.90)	3,749.4 (종전:3,761.5)	1,336.0 (종전:1,340.4)	626.9 (종전:631.3)	709.1	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: 동국제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철  
(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 유니온스틸빌딩)

마. 공사완료 고시일 : 2010년 6월 30일

바. 이전고시 내역

○ 사업시행면적

- 대 지 면 적 : 3,749.4㎡ (중전 3,761.5㎡)
- 정비기반시설 : 1,336.0㎡ (중전 1,340.4㎡)

○ 건축시설의 종류 및 규모

- 용 도 :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, 문화및집회시설
- 층 도 : 지하6층/지상28층
- 건 축 면 적 : 2,069.81㎡
- 건축연면적 : 55,694.62㎡(지상 37,591.14㎡, 지하 18,103.48㎡)

※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 : 별첨

○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 : 동국제강(주)

- 토지

순번	지번	지목	면적(㎡)	소유자	이전설정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비고
					종목	권리자	
1	수하동 66	대	3,749.4	동국제강(주)	-	-	대지
2	수하동 66-1	도	33.4	서울시 중구	-	-	무상귀속공공용지
3	수하동 66-2	도	371.4	서울시 중구	-	-	"
4	수하동 66-3	도	176.5	서울시 중구	-	-	"
5	수하동 66-4	공	13.7	서울시 중구	-	-	"
6	을지로2가 201	도	31.9	서울시 중구	-	-	"
계			4,376.3				사업시행완료면적

- 건축시설

구 분	업무시설(㎡)	근린생활시설(㎡)	문화및집회시설(㎡)
계	35,995.46	5,426.97	391.55
토지등 소유자	35,995.46	5,426.97	391.55
체비지	-	-	-
보류지	-	-	-

-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건수 : 없음

사. 관련서류 열람장소 : 상기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(☎ 02-317-1414)

▣ 확정측량에 따른 최종대지 지분 확정조서(이전고시 대상면적)

NO	소유자	종전 토지 및 건물						NO	소유자	확정 토지 및 건물					
		지번	토지(m <sup>2</sup> )		건물(m <sup>2</sup> )					지번	토지(m <sup>2</sup> )		건물(m <sup>2</sup> )		
			지목	지적	구조	용도	면적				지목	지적	구조	용도	면적
1	동국제강 (주)	수하동 50	대	3,761.50	RC	업무용 목조	4,407.90	1	수하동 66	대	3,749.40	SRC	업무,	55,694.62	
317.40					근린생활시설										
65.50					문화및집회시설										
2		수하동 50-8	대	36.20			36.20	2	수하동 66-1	도	33.40				
3		수하동 50-11	대	14.30			14.30	3	수하동 66-2	도	371.40				
4		수하동 50-14	대	368.70			368.70	4	수하동 66-3	도	176.50				
5		수하동 50-15	대	181.60			181.60	5	수하동 66-4	공	13.70				
6	을지로2가 9-14	대	4.30			4.30	6	을지로2가 201	도	31.90					
7	을지로2가 10-2	대	26.20			26.20									
계			4,392.80			5,422.10	계			4,376.30					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 - 56호

**동대문중부상권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**

1.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-38호(2004.04.01)로 시장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5-83호(2005.12.26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6-27호(2006.05.15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동대문중부상권(홍인·덕운)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분양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**2010년 7월 21일**  
**서울특별시 중구청장**

가. 정비사업의 종류(명칭) : 동대문중부상권(홍인·덕운)시장 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73번지

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4,072.9㎡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사업시행자의 명칭 :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  
(법인번호 : 110171-0029585)
- 2)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홍인동 3-4 우일타운 405호
- 3) 대표자의 성명 : 조합장 윤현덕
- 4) 대표자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45-6 신구레베빌 14차 202호

마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: 2010년 7월 19일

바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 수 (지상/지하)	높이(m)	주용도
4,072.90	2,431.14	59.69	49,938.92	613.50	18/7	86.95	판매시설 업무시설

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- 보류지 명세 : 5.09㎡(판매시설), 660.42㎡(업무시설)
- 체비시설 : 10,961.80㎡(업무시설)

3)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-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해당 없음
-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: 변경전과 동일함

위치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무상귀속 관리청	정비기반 시설의 종류
		지적	정비기반 시설편입			
서울 중구 신당동 773	대	4,144.30	71.4	동대문중부상권시장 재건축사업조합	서울시 중구	도로

※ 변경전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6-27호(2006.05.15)를 참조바랍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 - 493호

무연고 변사자(행려사망자) 공고

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,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변사자(행려사망자)의 시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변사자의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변사자(행려사망자) 인적 사항

- 등록 기준지 :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9번지
- 주 소 :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132 - 45
- 성 명 : 김광식 (성별 : 남)
- 주민등록번호 : 490202 - 1005\*\*\*
- 사 망 일 시 : 2010.06.02. 04:50
- 사 망 원 인 : 패혈증

나. 무연고 변사자 (행려사망자) 발생 상황

- 사 망 장 소 :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-79. 국립중앙의료원
- 사 망 경 위 : 변사자는 6.25. 전쟁고아로 가족관계증명서 상 무연고자로 분류된자임. 국립중앙의료원측에서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로구청과 서울구로 경찰서에 조회한 결과 시신을 인수할수 있는 유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로 파악된자임. 아울러 변사자는 2010년06월02일 04:50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망한자임.
- 안 치 장 소 :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-79. 국립중앙의료원 영안실

다. 변사자(행려사망자) 처리 및 보관 장소

- 시체처리방법 : 화장 후 납골당 안치
- 납 골 기 간 : 10년
- 납 골 장 소 : 서울특별시립 용미리 무연고 추모의 집 (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91-1번지)

라. 공고기간 : 2010. 07. 21. ~ 2010. 08. 20.(1개월간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사회복지과 (02-3396-539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0년 7월 21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 - 500호

###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

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『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3조제2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0년 7월 21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공고의 명칭 :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의 기간 : 2010. 7. 21. ~ 2010. 8. 21.(30일간)
3. 공고의 방법 : 구보, 인터넷, 전국 시군구 공고
4. 공시송달 대상

관리번호	업 체 명	대표자	등 록 일	사업장주소 (~동 이하 생략)	비고
2008-서울특별시-03163(대부업)	옥당기획	한정훈	2008.12.10.	서울 중구 인현동1가	소재불명

#### 5. 공시송달 내용

가. 위 대부업자는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소재확인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제6호에 의거 등록이 취소되며, 향후 5년간 대부업(대부중개업) 등록이 제한됩니다.

☞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중구청 지역경제과(☎02-3396-507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-504호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 - 504호

###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계획)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)로 정비구역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104호(1976.7.14)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74호(2007.8.16)로 구역변경지정된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
2.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(중구청 도시관리과, ☎02-3396-5774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0년 7월 21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.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(변경)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	중구 장교동 22-4번지 일대	1,976.9	증)2.1	1,979.0	· 구역계 변경없이 면적 착오 정정

다. 도시환경정비계획

1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m <sup>2</sup> )			비 율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합 계		1,976.9	증) 2.1	1,979.0	100.0	도면 변경없이 면적착오 정정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172.0	증) 0.2	172.2	8.7	
	도 로	172.0	증) 0.2	172.2	8.7	
택지 (획지)	4지구	1,804.9	증) 1.9	1,806.8	91.3	

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면 적(m <sup>2</sup> )			비 율(%)	비 고	
	기 정	변 경	변경 후			
합 계		1,979.0	-	1,979.0	100.0	-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1,979.0	-	1,979.0	100.0	

3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가) 도로 : 변경없음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광로	3	8	40 (42)	주간선 도로	1,650 (175)	경운동 (장교동20-3)	퇴계로 (을지로2가88-6)	일반 도로	-	총고722 (36.12.26)	삼일로
기정	소로	2	1	8	국지 도로	90	을지로2가 88-4	장교동 20-20	일반 도로	-	서고시2770 (2007.5.17)	
기정	소로	2	2	8	국지 도로	46	장교동 22-11	장교동 22-19	일반 도로	-	서고시2770 (2007.5.17)	
기정	소로	2	3	8	국지 도로	108	수표동 50-1	수표동 22-4	일반 도로	-	서고시2770 (2007.5.17)	

4) 건축시설계획

구 분	구 역 구 분		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		위 치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m) 최고층수	비고 (연면적)
	명 칭	면적 (㎡)	명칭	면 적 (㎡)						
기정	장교구역 제5지구	1,976.9	획지	1,804.9	장교동2 2-4 일대	-	-	-	-	-
변경	장교구역 제5지구	1,979.0	획지	1,806.8	장교동2 2-4 일대	업무 시설	60 이하	1,000 이하	95m / 20층이하	27,490.65㎡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삼일로변 저층부(5층 이하) : 건축지정선 5m 계획</li> <li>• 삼일로변 고층부(6층 이상) : 벽면한계선 10m 계획</li> <li>• 대상지 남측 도로변 : 건축한계선 1m 계획</li> </ul>								

5) 정비기반시설부담 계획(관리청으로 무상귀속)

구역명	위치	시설종류	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(㎡)		
			기정	증 · 감	변경
장교구역 제5지구	장교동22-6	도로	-	증) 28.6	28.6
	장교동22-11		-	증) 27.2	27.2
	장교동22-16		-	증) 0.2	0.2
	장교동22-17		-	증) 15.3	15.3
	장교동22-18		-	증) 23.3	23.3
	장교동22-19		-	증) 28.0	28.0
	장교동22-23		-	증) 49.6	49.6
합 계			-	증) 172.2	172.2

라. 변경 사유

○ 1973년 구역지정 이후 관련법령 개정 및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과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

마. 공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

바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시관리과(☎02-3396-5774)

사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 - 512호

**쌍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**

1. 서울시고시 제2007-438호(2007.11.29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시중구고시 제31호(2008.4.30)로 사업시행인가된 “쌍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”에 대하여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사업시행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,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**2010년 7월 21일**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가. 사업의명칭 : 쌍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- 나. 사업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46-17번지 일대
- 다. 시행 면적 : 7,926.5㎡(대지면적:6,482.659㎡, 정비기반시설:1,443.85㎡)
- 라. 시행자성명 : (주)시우피앤디 대표 김양곤
- 마. 주된 사무소위치 :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8-22번지 코람빌딩 4층
- 바. 변경 내용 : 건축계획 변경

1) 건축규모

구분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연면적 (㎡)	높이 (m)	용도별면적				비고
						업무시설	판매시설	기계/전기	주차장	
변경전	3,887.90	59.97	799.80	80,400.76	87.10	52,673.28	7,933.38	5,560.23	14,233.87	
변경후	변경없음	변경없음	799.81	변경없음	변경없음	52,925.67	7,674.91	5,499.05	14,301.13	
비 고	-	-	증)0.01	-	-	증)252.39	감)258.47	감)61.18	증)67.26	

## 2) 층별 바닥면적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비고
지상20층	2,355.25 m <sup>2</sup>	2,336.62 m <sup>2</sup>	+1.37
지상19층	2,333.64 m <sup>2</sup>	2,325.45 m <sup>2</sup>	-8.19
지상18층	2,329.76 m <sup>2</sup>	2,321.62 m <sup>2</sup>	-8.14
지상17층	2,270.45 m <sup>2</sup>	2,272.79 m <sup>2</sup>	+2.34
지상16층	2,326.60 m <sup>2</sup>	2,319.08 m <sup>2</sup>	-7.52
지상15층	2,326.32 m <sup>2</sup>	2,318.79 m <sup>2</sup>	-7.53
지상14층	2,326.04 m <sup>2</sup>	2,318.54 m <sup>2</sup>	-7.50
지상13층	2,325.77 m <sup>2</sup>	2,318.25 m <sup>2</sup>	-7.52
지상12층	2,269.06 m <sup>2</sup>	2,271.41 m <sup>2</sup>	+2.35
지상11층	2,325.21 m <sup>2</sup>	2,317.70 m <sup>2</sup>	-7.51
지상10층	2,324.94 m <sup>2</sup>	2,317.43 m <sup>2</sup>	-7.51
지상9층	2,324.66 m <sup>2</sup>	2,317.16 m <sup>2</sup>	-7.50
지상8층	2,324.39 m <sup>2</sup>	2,316.80 m <sup>2</sup>	-7.59
지상7층	2,267.73 m <sup>2</sup>	2,270.18 m <sup>2</sup>	+2.45
지상6층	2,290.99 m <sup>2</sup>	2,307.21 m <sup>2</sup>	+16.22
지상5층	3,645.37 m <sup>2</sup>	3,675.03 m <sup>2</sup>	+29.66
지상4층	3,645.37 m <sup>2</sup>	3,675.03 m <sup>2</sup>	+29.66
지상3층	3,813.03 m <sup>2</sup>	3,802.05 m <sup>2</sup>	-10.98
지상2층	2,598.81 m <sup>2</sup>	2,595.40 m <sup>2</sup>	-3.41
지상1층	3,444.85 m <sup>2</sup>	3,452.61 m <sup>2</sup>	+7.76
소계	51,848.24 m <sup>2</sup>	51,849.15 m <sup>2</sup>	+0.91
지하1층	5,889.08 m <sup>2</sup>	5,664.40 m <sup>2</sup>	-224.68
지하2층	5,900.03 m <sup>2</sup>	5,878.42 m <sup>2</sup>	-21.61
지하3층	5,900.45 m <sup>2</sup>	5,878.42 m <sup>2</sup>	-22.03
지하4층	5,900.45 m <sup>2</sup>	5,861.10 m <sup>2</sup>	-39.35
지하5층	4,962.51 m <sup>2</sup>	5,269.27 m <sup>2</sup>	+306.76
소계	28,552.52 m <sup>2</sup>	28,551.61 m <sup>2</sup>	-0.91
합계	80,400.76 m <sup>2</sup>	80,400.76 m <sup>2</sup>	변경없음

3) 기타 사항

- 조경면적 변경 : 1,037.22㎡ → 1,309.30㎡(증 272.08㎡)
- 공개공지 면적 : 816.81㎡ → 829.23㎡(증 12.42㎡)
- 주차대수 변경 : 378대 → 377대(감 1대)

사. 사업시행기간 : 2008.4.30 ~ 2012.10.30

아. 변경사유 :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바닥면적 증,감 등

자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차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(☎3396-5773)

카. 관계서류 : 생략(중구청 도시관리과 비치도서와 같음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 - 516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7월 21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 
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·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중구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기능 및 구성  
(안 제3조 내지 제4조)
- 나.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(안 제5조 내지 제6조)
- 다. 위원회 운영 및 심의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내지 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 : 교통지도과장, 전화 : 3396-6255, 팩스 : 3396-4354, e-mail : ksyang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교통지도과(☎3396-625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 - 517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7월 21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임원의 연임기준을 1년 단위로 변경하는 등 지방공기업법령과 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기준의 변경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고, 연임시 1년 단위로 연임

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, 임원의 연임 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을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며, 이 경우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토록 함(제7조, 제8조)

나.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추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의무화

이사장 공모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을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모든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(제9조~제11조)

다.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며,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규정을 정함

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되 비상설 위원회로 하며,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규정된 내용으로 정함(제11조의2, 제20조~제22조)

라.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를 규정

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회의를 소집토록 하며,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도록 함(제17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기획예산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, ☎3396-4914, FAX2260-1151, e-mail : ibank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(☎02-2260-1233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6조 <생략>	제1조 ~ 제6조 <현행과 같음>
제7조(임원)	제7조(임원)
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,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정한다.
② 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,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 단, 정원이 51명 이상 150인 미만의 경우에는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.	② <삭제>
③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	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제8조(임기)	제8조(임기)
① 공단의 이사장·이사·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단, 이사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	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단 당연직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<신설>	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임 또는 해임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다.
② 이사장·이사·감사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되는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	③ 임원의 임기 ----- ----- -----.

<p>제9조(이사장)</p> <p>①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여야 하며 법 제58조의2 규정에 의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&lt;생략&gt;</p>	<p>제9조(이사장)</p> <p>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,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이사장과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이사)</p> <p>① 공단의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최초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한다.</p> <p>② 비상임 이사는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의 국장 2인을 당연직으로 하고, 세무 및 회계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이사)</p> <p>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,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단,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 <p>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.</p>	<p>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,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.</p>
<p>제11조(감사)</p> <p>① 공단의 감사는 구청장이 구의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한다.</p>	<p>제11조(감사)</p> <p>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

<p>② &lt;생략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제12조 &lt;생략&gt;</p> <p>제13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, 이 경우 공단을 대표할 임원이 없을 때에는 <u>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</u></p> <p>제14조~제16조 &lt;생략&gt;</p> <p>제17조(이사회)</p> <p>① ~ 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<u>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④ <u>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u>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의2(임원추천위원회) 공단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 제58조,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(이하“영”이라고 한다) 제56조의3에 따라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.</p> <p>제12조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제13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----- ----- -----, 이 경우 <u>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</u></p> <p>제14조~제16조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제17조(이사회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④ <u>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<u>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</u></u></p> <p>⑤ <u>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u></p>
--	--

<p>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공단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⑥ ----- ----- -----.</p>
<p>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	<p>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
<p>제18조~제19조 &lt;생략&gt;</p>	<p>제18조~제19조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제3장 <u>이사장추천위원회</u></p>	<p>제3장 <u>임원추천위원회</u></p>
<p>제20조(<u>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</u>)</p>	<p>제20조(<u>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</u>)</p>
<p>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,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중구의회(이하"구의회"라 한다)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</p>	<p>①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.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<u>2인</u> 3.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<u>3인</u></p>	<p>1. ----- 2인 2. ----- <u>3인</u> 3. ----- <u>2인</u></p>
<p>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.</p>
<p>1. 경영전문가 2.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. <u>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</u></p>	<p>1. ----- 2. ----- 3. <u>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</u></p>
<p>4. 공인회계사 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p>	<p>4. ----- 5. ----- -----</p>
<p>③ &lt;생략&gt;</p>	<p>③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</p>	<p>&lt;삭제&gt;</p>

<p>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</p>	
<p>제21조(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)</p>	<p>제21조(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)</p>
<p>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, 구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</p>	<p>① 공단은 임원의----- ----- 임원을 ----- -----, 구청장과 구의회에 ----- -----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</p>
<p>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.</p>
<p>③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공단 업무를 지도 감독 및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관·과장으로 한다.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둔다.</p>
<p>④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</p>	<p>⑤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.</p>
<p>제22조(이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)</p>	<p>제22조(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)</p>
<p>① 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, 후보추천 대상자 선정방법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p>	<p>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구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, 영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</p>

<p>② 추천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1.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</p> <p>2.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</p> <p>④ 추천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으며, 관계기관 등에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제23조(수당 등) 다음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출할 수 있다.</p> <p>1. 추천위원회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는</p>	<p>하는 일간신문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 <p>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----- 임원 ----- 하며, 의결 즉시 임명권자인 구청장 또는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구청장 또는 이사장은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 임원 ----- 임원 -----.</p> <p>1. 법 제60조에 따른-----.</p> <p>2. -----.</p> <p>⑤ ----- 임원 -----.</p> <p>제23조(수당 등) -----.</p> <p>1. -----</p>
--	---

<p>경우 수당 및 여비</p> <p>2. 참고인(후보자 포함) 등의 면접·의견청취 등을 위한 출석의 실비보상</p> <p>3. <u>이사장</u>후보자의 모집·조사·협조 및 용역 등을 위한 경비</p> <p>제24조 &lt;생략&gt;</p> <p>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제26조~제39조 &lt;생략&gt;</p>	<p>-----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<u>임원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4조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-----</p> <p>----- 영 제63조의 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6조~제39조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---	---

인사발령
------

5급 일반직공무원 공로연수

(2010년7월20일자)

連番	姓 名	發 令 內 容	現 職	
			所 屬	職 級
1	박명서	행정관리국 근무를 명함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(기간 : 2010.07.20~2011.06.30)	교 통 행 정 과	지 방 행 정 사 무 관

일반직공무원 복직, 전보 및 휴직

(2010년7월20일자)

連番	姓 名	發 令 內 容	現 職	
			所 屬	職 級
1	홍정아	복직을 명함 도시관리국 토지관리과 근무를 명함	건 설 관 리 과	지 방 시 설 주 사 보 ( 지 적 )
2	허진옥	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근무를 명함	토 지 관 리 과	지 방 행 정 서 기 보
3	김수지	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명함 (기간 : 2010.07.20~2011.07.19)	소 공 동	기 능 8 급 지 방 사 무 실 무 원 ( 전 산 )